

가입·탈퇴규정

전부개정 2023.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회원단체의 가입, 탈퇴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회원단체가 회원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3. “등급”은 정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을 말한다.
4. “승격”은 준회원 단체가 정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5. “강등”은 정회원단체가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준회원단체가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6. “제명”은 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7. “올림픽대회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가입 및 등급 심의 당시에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회원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8.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국제경기연맹(IF)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인정하는 아시아경기연맹(AF)에 가입한 단체일 것. 다만, 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최초 등급은 인정단체가 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대회 종목은 4개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1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회원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준회원단체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 ④ 체육회는 가입 심의대상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회원종목단체 가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준회원단체 이상의 등급이 확정된 회원종목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이 되어야 한다.

제4조(가입 심의절차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경기연맹 또는 아시아경기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종목단체는 제1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5.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6.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7.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8. 시·도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9. 시·군·구종목단체 설치 현황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예·결산서 및 해당년도 예산서
 13.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F) 및 아시아경기연맹(AF) 가입 관련 서류
-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다음해 3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국가대표 선수 파견 및 훈련을 위한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가입·등급심사위원회는 가입요건,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5조(등급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등급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심의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심의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회원종목단체 요구: 회원시·도체육회에 가입한 시·도종목단체 가입 현황
2. 회원시·도체육회 요구: 시·도종목단체 가입 및 등급 현황, 대회 개최 현황
3.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건

제6조(승격) ①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는 해당 등급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면 승격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인정단체가 제3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만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승격 대상이 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승격을 위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가입 요건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도체육회에 가입된 시·도종목단체 수와 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 9개 이상(과반수가 준회원 등급 이상)
2.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 12개 이상(전체가 준회원 등급 이상). 다만 올림픽대회 종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하계올림픽대회 종목일 경우: 6개 이상(전체가 준회원 등급 이상)
 - 나. 동계올림픽대회 종목일 경우: 4개 이상(전체가 준회원 등급 이상)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의3에 따른 직전 평가 결과가 최저등급인 경우
2. 회원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3. 관리단체 해제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격 희망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임원 명단
 3. 단체의 정관
 4. 시도별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5. 회원시·도체육회에 가입한 시·도종목단체 현황
 6. 전국 대회 개최 및 국제 대회 입상 실적
 7.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현황(연 1회 이상)
- ⑤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승격요건,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승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준회원단체로의 승격: 이사회 의결
2. 정회원단체로의 승격: 총회 의결

제7조(강등 및 제명)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정관 제13조에 따라 강등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 또는 승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정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회원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5. 국회,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외부 감사와 체육회의 감사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강등 또는 제명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강등 또는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1.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2. 강등 또는 제명 시 문제점
 3. 개선 가능성
 4. 제1항제5호에 따른 처분 조치 이행 가능여부
- ③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최저등급인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강등한다.
- ④ 체육회 정관 제12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한다.

제8조(탈퇴) ① 회원단체가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탈퇴한다.

②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가입·등급심의위원회) ① 체육회는 가입, 승격, 강등, 제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가입·등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회원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승격,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되, 체육회 사무총장과 체육진흥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며 위원 9명 이상 11명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원시도체육회의 가입과 등급)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시·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단체 소개서(지역소개, 조직현황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허가증
6. 법인 등기부등본
7.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8. 법인설립 총회 회의록

② 회원시·도체육회는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본다.

③ 회원시·도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제외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 국가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시도체육회 규정의 적용) ① 회원시·도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시·도종목단체에 한정하여 가입·탈퇴규정의 가입요건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3. 2. 10.)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강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강등을 유예한다.

② 이 규정 제7조제3항의 평가 결과의 반영은 개정안 시행일 연도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